

「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공급기업 모집공고

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「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공급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
- 화상회의, 재택근무(협업 Tool), 네트워크·보안솔루션,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
□ 사업내용

-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(Voucher) 지급·활용

<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설명 >

구분	내용
공급기업	▶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수요기업(중소기업)에게 제공·판매하는 기업 (리셀러* 제외) *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(상품)를 유통·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
수요기업	▶ 바우처를 지급받아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

☐ **신청대상** :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·중견기업

☐ **지원규모** : 별도 선정규모 없음

* 우수 공급기업의 많은 참여를 통해 수요기업의 서비스 상품 선택 폭 확대

☐ **신청분야** : ① 화상회의, ② 재택근무(협업 Tool), ③ 네트워크·보안 솔루션, ④ 메타버스 사무실(신규) 중 1개 분야

< 신청 분야 >

서비스 분야	서비스 개요
① 화상회의	기업 내·외부간 회의,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
② 재택근무(협업 Tool)	기업 내 임·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
③ 네트워크·보안솔루션	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
④ 메타버스 사무실* (‘23년 신규 추가)	기업 내 임·직원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 환경 및 이용자간 상호 작용이 가능한 교류·소통 환경을 가상공간(2D·3D)으로 제공하는 서비스

* ‘메타버스 사무실’ 분야 중 업무협업 기능이 없는 단순 일회성 공간(전시장, 교육장 등)을 제공하거나 기업 맞춤형 가상공간 제작 서비스(디자인 등)는 지원 제외

2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◆ 아래 기본요건을 미충족한 공급기업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되며, 선정 이후라도 기본요건 및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◆ ‘22년 공급기업 중, ‘23년 협약연장 기업은 본 모집공고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.

☐ **기본요건**

❶ 자체 개발 완료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보유하고,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·판매가 가능한 기업 (리셀러 제외)

* 협약·계약 등을 통해 중견·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 경우도 자체 개발로 인정

② 수요기업의 이용실적(시스템 로그인 및 로그 기록)을 보유하고,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업

- * 창업진흥원(이하 전담기관)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기록(엑셀 양식)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로그 기록(기업 자율 양식)을 매월 제출(최대 6개월까지)해야 함
- ** 선정평가 시 이용실적 제출 자료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

③ 시장 판매가격을 증빙* ·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

- * 판매상품 URL(자사 홈페이지, 오픈마켓 등), 판매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) 등을 제출해야 하며, 기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청 불가함

④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

- * (예시) 키오스크, 열화상카메라, 발열체크기, PC 등 장비의 제공·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: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

-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- * 단, 세금납부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※ ①, ②의 '예외'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시, 관련 증빙 필수 제출

③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

④ 주된 업종이 '일반유흥주점업', '무도유흥주점업', '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'에 해당하는 기업

No	대상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⑤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행 배제 기업

⑥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

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(대표자 포함)

3. 사업내용

< '23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주요 변경사항 >

구분		2022년	2023년
지원분야		▸ 화상회의, 재택근무, 네트워크·보안	▸ 화상회의, 재택근무, 네트워크·보안, 메타버스 사무실(신설)
수요기업	지원규모	▸ 1.5만개 내외	▸ 5천개사 내외
	이용기간	▸ 선정 후 90일 이내	▸ 선정 후 60일 이내
공급기업	서비스 지원기간	▸ 최대 24개월	▸ 최대 12개월

□ 서비스 상품 등록

- 공급기업은 사업 신청 시, 서비스 상품별 최대 220만원 한도(부가세 포함)로 최대 3개*까지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(이하 '플랫폼')에 등록

* 선정평가를 통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상품 등록을 승인하며, 신청한 서비스 상품 중 일부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- 서비스 상품 등록 시, 이용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설정 가능하며, 자세한 상품 가격 정보*를 기입

* 공급가액, 부가세(수요기업 부담), 옵션가격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

□ 서비스 상품 제공

- 수요기업은 선정 후 바우처 한도(400만원) 내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을 결제하며, 공급기업은 결제한 수요기업에 서비스 상품 제공

* 수요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전액 집행해야 하며,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20만원(부가세 포함)까지 결제 가능

□ 이용실적 제출

-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결제 후 30일 이내의 이용실적(시스템 로그인 및 로그 기록)을 플랫폼에 제출

- 수요기업의 실사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결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플랫폼에 매월 이용실적을 제출

※ (주의) 서비스 상품 결제 후 수요기업의 이용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, 공급기업에 결제된 금액이 취소될 수 있음

- i) 결제 후, 30일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→ 해당 건의 결제취소 및 수요기업 바우처 잔액 환수
- ii) 서비스 이용 중, 3개월 연속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→ 월할 계산하여 수요기업 바우처 잔액 환수

□ 대금 지급

- 수요기업의 실사용 여부가 확인된 건에 한하여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에 서비스 상품 결제대금 지급

* 서비스 상품 등록 및 결제대금 지급 절차는 '참고1' 참조

4. 신청 · 접수

□ **접수기간** : 2023년 2월 24일(금), 09:00 ~ 3월 10일(금), 16:00까지

*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플랫폼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**하는 것을 권장 ("신청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 일시 전까지는 수정 가능)

< 신청 시 유의 사항 >

- 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,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
- ② 신청기간 내 모든 제출서류를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함
- ③ 신청기간 내 향후 실제 판매될 서비스 상품 설명내용(인포그래픽, 서비스 개요, 특징, 홍보물 등)을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
 - * 즉, 평가 시 플랫폼에 등록한 내용 그대로 판매될 예정이며,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등록해야 함
- ④ 신청마감 이후, 플랫폼에 등록된 내용 및 접수 서류 일체 수정·삭제 불가

□ **신청방법** :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(제출자료 업로드, 서비스 상품 등록)

- 사업 신청은 해당 중소·중견기업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, 회원가입 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

<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>

① 플랫폼 접속 → ②회원가입(대표자 본인) 및 로그인 → ③사업신청 메뉴 클릭 → ④공급기업 정보 입력 → ⑤서비스 상품 등록(최대 3개) → ⑥사업신청(신청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)

□ **제출서류** :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업로드

구분		목록	비고											
필수	서비스 상품 확인 서류	• 서비스 개요서(서비스 상품 요약서 등) * 서비스 상품 내용, 가격 책정내역, 수요기업의 이용실적 제출 계획 등 • 서비스 상품 시장가격 확인서류 (①, ② 필수) ① 서비스 상품 판매 사이트 주소 (URL) * 자사 홈페이지 또는 오픈마켓 판매주소 등으로 실제 판매하는 상품인지 여부 확인 (댓글, 리뷰 등을 종합확인) * URL은 등록 서비스 상품과 관계된 상품이 확인되어야 함 ② 서비스 상품 판매 계약서, 계산서(또는 카드매출전표), 거래 명세서 등 시장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* 증빙자료는 등록 서비스 상품과 관계된 자료이어야 함												
	사업자 관련 서류	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• 재정건전성 확인서류 ('20년, '21년)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<tr><td>개인 사업자</td><td>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재무상태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(중 택일)</td></tr><tr><td>법인 사업자</td><td>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(중 택일) ③ 법인등기부등본</td></tr></table> * 접수 마감일 기준 초기 스타트업(창업 3년 미만)은 미제출 •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류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<tr><td>중소기업</td><td>중소기업 확인서, 벤처기업 확인서, 이노비즈 인증서, 메인비즈 인증서 (중 택일)</td></tr><tr><td>중견기업</td><td>중견기업 확인서</td></tr></table>	구분	제출서류	개인 사업자	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재무상태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(중 택일)	법인 사업자	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(중 택일) ③ 법인등기부등본	구분	제출서류	중소기업	중소기업 확인서, 벤처기업 확인서, 이노비즈 인증서, 메인비즈 인증서 (중 택일)	중견기업	중견기업 확인서
구분	제출서류													
개인 사업자	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재무상태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(중 택일)													
법인 사업자	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표준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(중 택일) ③ 법인등기부등본													
구분	제출서류													
중소기업	중소기업 확인서, 벤처기업 확인서, 이노비즈 인증서, 메인비즈 인증서 (중 택일)													
중견기업	중견기업 확인서													
필수	기타	• 청렴서약서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										
해당 시	가점 증빙서류	• 최근 6개년(‘17~‘22년)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&D 지원사업 사업수행증명서(수행확인서) 및 최종평가결과 확인증												
	기타	• 신청(지원) 제외 대상의 예외 증빙												

*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, 서비스 개요서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(선정평가 탈락)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해야 하며, 발급 및 문의처는 '참고3' 참조

5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방법 및 절차

< 공급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(안) >

평가단계	수행내용	비고
요건검토 □	· 채무불이행, 휴·폐업 여부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확인	3월중
서류평가 □	·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서비스 적합성, 제공 안정성 등 평가	3월말~4월초
발표평가 (필요시 현장점검) □	·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서비스 이행 계획 및 역량, 우수성 등 평가	4월중~말
최종선정	· 공급기업 최종선정 공지	5월초

* 평가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- (평가절차)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요건검토,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선정
- (요건검토) 신청자격 및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요건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진행
- (서류평가) 서비스 적합성 및 제공 안정성,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(가점 합산)하고, 서류평가 통과기업(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)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

*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의 40%에 미달시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탈락(과락제 적용)

< 서류평가 지표(안) >

평가항목	주요내용
1. 서비스 적합성	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성 신청 서비스 분야 관련성 및 적합성
2. 서비스 제공 안정성	서비스 운영 안정성 재정 건전성
3. 서비스 운영 실적	고정적 서비스 수요자(유저) 확보 현황 최근 3년 서비스 제공 실적(유저 수 포함)

* 초기 스타트업(창업 3년 미만)의 경우 '재정 건전성'은 평가 제외

**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< 서류평가 가점항목 및 점수 >

가점내용	제출서류	점수
■ '17~'22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	사업수행증명서 (수행 확인서)	최대 5점 (사업당 1점)
■ '17~'22년 중기부 R&D 지원사업 선정기업	최종평가결과 확인증	

* 가점 인정 사업은 '참고2' 참조

** 가점 인정 사업 수행 중 '중도포기·중단·실패'일 경우는 불인정하고, 제출서류는 사업수행 증명서(수행 확인서(K-Startup))와 최종평가결과 확인증(SMTECH)만 인정하며 협약서는 불인정

- **(발표평가)** 서비스 상품 이행 계획 및 역량, 우수성, 판매 및 홍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선정 (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)

*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의 40%에 미달 시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탈락(과락제 적용)

**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(PPT 등)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화상평가로 운영 예정(다만, 이후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대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)

< 발표평가 지표(안) >

평가항목	주요내용
1. 서비스 이행 계획 및 역량	서비스 이행을 위한 계획 및 목표, 체계의 타당성
	서비스 이행 능력의 전문성 및 우수성 (수행조직, 참여인력 전문성 등)
2. 서비스 우수성	서비스의 구체성 및 필요성
	서비스 편의성
3. 판매 및 홍보전략	공급단가의 적정성
	서비스 제공 내용의 차별성, 수요기업 대상 홍보·영업 전략

*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☐ **최종선정 : '23. 5월 초**

○ 플랫폼을 통해 공지(게시) 예정

6. 유의사항

◆ 본 사업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**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-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**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** 있습니다.

□ 신청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,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및 공고문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 하고,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공고 및 지침 내용 미숙지, 제출자료 누락, 서비스 개요서 양식 미준수,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기업에게 있음
- 공급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, 선정 이후라도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가 있을 수 있으며,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선정 (협약) 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만 가능하며, 플랫폼에 등록하는 서비스 상품과 시장에서 판매 하는 서비스 상품은 가격, 구성 등이 동일하여야 함

- 신청자격 요건검토 등을 위하여 휴·폐업 사실증명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서비스 저작권(상표)등록증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공급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한 서비스 상품(최대 3개) 중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낮을 경우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-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서비스 상품 판매 · 결제 관련 유의사항

- 본 사업을 통해 제공·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제공·판매하는 공급기업 및 대표자에게 있음
- 공급기업은 원칙적으로 물품, 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제공 및 판매가 불가하며, 기존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선정된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물품 제공(끼워팔기 등)은 불가함
- 공급기업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 상품을 유료로 전환하여 본 사업을 통해 제공·판매하는 것을 금함
- 선정된 공급기업은 서비스 상품 결제 등을 위한 플랫폼과 연계된 카드사 가맹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, 결제에 따른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
- 특정 공급기업의 바우처 판매액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

-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공급기업이 판매 완료한 서비스 상품 확인 및 정산 등을 위하여 공급기업의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할 수 있음
- 서비스에 대한 점검결과 서비스 공급이 부실한 기업은 사업 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될 수 있고,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기업은 퇴출 조치될 수 있음
 - * 서비스 내용 검증 및 공급기업 실사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
- 수요기업이 폐업하는 경우, 폐업일 해당 월까지는 정상 사용으로 간주하고, 다음 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상품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환수하여 후순위 기업에 배정
 - * 예시) 12개월(월 10만원)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 중인 수요기업이 폐업(5.2)한 경우 5월까지는 정상 사용(10만원x5개월)으로 간주하고, 6월부터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(10만원x7개월)하여 환수
- 본 사업의 협약기간 내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,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시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 확인 등을 위한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공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서비스 개요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, 신청자격 및 신청(지원) 제외대상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,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□ 수요기업 이용실적 제출 관련 유의사항

- 공급기업은 매월 말 기준으로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공(최대 6개월까지)하여야 함
 - * 해당 서비스 상품의 이용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공급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수요기업은 선정 취소되며, 30일 동안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 비용은 공급기업이 부담함
- 수요기업이 3개월 연속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, 공급기업은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, 남은 기간의 바우처 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해야 함

□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

-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사업 부정행위에 해당되며, 부정행위 확인 시 사업비 환수, 수사의뢰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
 - 공급기업이 판매금액의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업체 등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("리베이트")
 - * (예시) 공급기업 A사는 판매대행업체 B사가 모집한 수요기업들이 A사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한 대가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○○천만원을 B사에 지급
 -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현금·현물 등을 서비스 제공기업에 지급하는 행위("페이백")
 - * (예시) 공급기업 C사는 수요기업 D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○○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 D사에 제공
-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7. 선정기업의 의무

- ☐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,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, 표준협약서, 서비스 이용·제공 약관 등*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* 관리지침, 협약서 등은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을 통해 공지 예정

** 향후 관리지침이 개정되는 경우, 개정된 지침내용을 준수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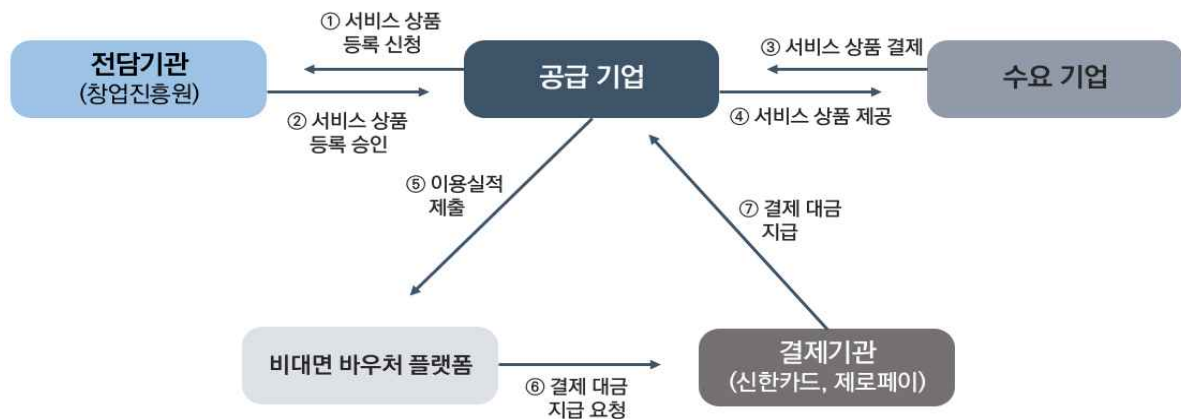
- ☐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, 전담기관,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,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☐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8. 신청문의

- ☐ 신청·접수 시스템 문의 : 바우처 콜센터 (1670-1357)
- ☐ 사업 관련 문의 :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(044-410-1990, 1991)

참고1

서비스 상품 등록 및 결제대금 지급 절차



- ① **(서비스 상품 등록 신청)** 공급기업이 사업 신청 시, 서비스 상품별 최대 3개 까지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(이하 '플랫폼')에 등록
- 수요기업이 서비스 상품 결제 전에 상품 가격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하게 공지

< 서비스 상품 가격 구성(예시) >

상품가격 (세금계산서)	공급가액		부가세
	정부 지원금 (70%)	자부담금 (30%)	
2,200,000원	1,400,000원	600,000원	200,000원

*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%(최대 280만원)를 지원하고, 나머지 자부담금 및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부담(※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)

- ② **(서비스 상품 등록 승인)** 전담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상품 등록을 승인
- ③ **(서비스 상품 결제)** 수요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바우처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을 결제(1개 공급기업에 부가세 포함 최대 220만원까지 결제)
- ④ **(서비스 상품 제공)** 공급기업은 결제한 수요기업에 서비스 상품을 제공
- ⑤ **(이용실적 제출)** 공급기업은 결제 후 30일 이내의 수요기업의 이용실적을 플랫폼에 매월 제출(최대 6개월까지)하고, 운영기관은 로그인 기록을 통해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
- ⑥ **(결제대금 지급 요청)** 전담기관은 서비스 상품 실사용이 확인되면 플랫폼을 통해 결제기관에 결제대금 지급 요청
- ⑦ **(결제대금 지급)** 결제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결제대금 지급

□ 창업사업화 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목록 ('17년~'22년)

-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 (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)
-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
 - TIPS 연계지원(사업화), 창업기획사
-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
-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
- 세대융합 창업캠퍼스
- 스마트벤처캠퍼스 (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)
-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
- 재도전성공패키지 (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)
 - 일반형(Track 2), 투자형 * 교육만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
- 예비창업패키지 (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)
-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(사업화)
- 창업맞춤형사업
-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
- 창업성공패키지 (舊 청년창업사관학교)
- 창업인턴제 (사업화)
-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(2019년~)
-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(3단계)
-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(舊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)
-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(3대 신산업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,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)
-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
-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
-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 창업 사관학교)
-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

□ R&D 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 R&D지원사업 목록 ('17년~'22년)	
○	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- 글로벌전략기술개발, 혁신기업기술개발, 기업 서비스연구개발
○	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 - 융복합기술개발, 센터연계형기술개발, 융합전략과제, 현장기획과제
○	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-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,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, 이전기술개발, 구매조건부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, 기술전문기업협력
○	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
○	창업성장기술개발 - 창업기업기술개발,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, 창업기업과제, 기술창업투자연계(TIPS)과제
○	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- 첫걸음 R&D, 도약R&D,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&D, 이공계전문가R&D서포터즈, 첫걸음협력, 도약협력, 전략협력, 연구장비공동활용
○	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-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,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, 현장수요형
○	중소기업 R&D기획역량제고 - R&D기획지원, R&D기획역량강화
○	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- 주관기관 공동활용, 자유형 공동활용
○	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-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, 취업연계R&D교육센터운영
○	WC300 프로젝트 지원 - WC300 R&D,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,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
○	기술혁신개발사업 - 수출기업기술개발, 혁신형기업기술개발
○	제품서비스기술개발
○	공정·품질 기술개발 -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,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
○	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(R&D)

- **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**
 - WC300프로젝트 R&D지원, 중견기업글로벌도약 기술개발
- **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**
- **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**
- **중소기업R&D 역량제고**
 - R&D기획지원,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,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-up R&D
- **재도전 기술개발사업**
 - 재도전기술개발, 사업전환 기술개발
- **지역특화산업육성**
 - 지역주력산업육성, 지역연고산업육성
-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**
 -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, 연구인력 채용지원
- **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(지역중소·중견기업 R&D산업인턴 지원)**
- **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(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)**
- **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**
 -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, K-앱시스트 기술개발
- **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**
- **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&D**
- **연구기반활용**
 - 공유확산형, 연구집중형
- **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**
 - 산연 협력희망기업진단, 산연 협력기술개발
- **산학연 Collabo R&D (예비연구)**
 - 산학협력 R&D, 산연협력 R&D
- **산학연협력 신사업 R&D 바우처**
- **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**
- **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**
 -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,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, 고경력 연구인력채용지원, 기업 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

참고 3

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

분류	제출서류명(사본 가능)	발급처
필수서류	① 서비스 개요서	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공급기업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·제출
	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	③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 또는 손익계산서 ('20년, '21년)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	④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 신청시에 한함)	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	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	벤처기업확인서	정부24(www.gov.kr) 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(www.smes.go.kr/venturein)
	⑤ 이노비즈확인서	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www.innobiz.net)
	메인비즈 인증확인서	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 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www.mainbiz.go.kr)
	중견기업확인서	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)
	⑥ 청렴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 공고문 페이지의 첨부양식 작성·제출
가점서류	중소벤처기업부 '17~'22년 창업 사업화지원사업 및 R&D 지원 사업 사업수행증명서(수행확인서) 및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(지원받은 사업이 다수일 경우, 사업 별 수행확인서 전체 제출)	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* 발급방법 : k-Startup 로그인 → 사업신청관리 → 나의사업관리 → 내정보관리(이용환경관리) → 증명서발급 → 사업수행증명서(수행확인서) 발급 ** 창업성공패키지는 졸업장 제출(재발급은 졸업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)
		R&D 지원사업 : SMTECH(www.smtech.go.kr) * 발급방법 : SMTECH 로그인 → 고객지원 → 확인서 발급 → 발급신청하기 → 최종평가확인 발급